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호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8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발 의 자 : 김호진 의원(1명)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인제, 김태호,
박기재, 성흠제, 우형찬,
이승미, 이영실, 이은주,
조상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내 일부 용도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 외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물 규정을 정비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 중 “요양소”를 “요양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의 최고한도
란 중 “200㎡당”을 “122㎡당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비고 제2호마목 중 “시설물
(판매시설 중 백화점·쇼핑센터·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·전
시장·예식장은 제외한다)”을 “시설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[별표3]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 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(제 21조제2항 관련)</p>	<p>[별표3]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 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(제 21조제2항 관련)</p>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시설물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최고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위락시설</td> <td>시설면적 134㎡ 당 1대</td> </tr> <tr> <td>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 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 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 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장례식장</td> <td>시설면적 <u>200㎡ 당</u> 1대</td> </tr> <tr> <td>3.~8.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설물	최고한도	1.위락시설	시설면적 134㎡ 당 1대	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 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 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 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장례식장	시설면적 <u>200㎡ 당</u> 1대	3.~8.(생략)	(생략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시설물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최고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위락시설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 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을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 설중 방송국, 장례식장</td> <td>시설면적 <u>122㎡ 당</u> 1대</td> </tr> <tr> <td>3.~8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설물	최고한도	1.위락시설	(현행과 같음)	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 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을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 설중 방송국, 장례식장	시설면적 <u>122㎡ 당</u> 1대	3.~8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시설물	최고한도																
1.위락시설	시설면적 134㎡ 당 1대																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 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 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 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장례식장	시설면적 <u>200㎡ 당</u> 1대																
3.~8.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
시설물	최고한도																
1.위락시설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 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을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 설중 방송국, 장례식장	시설면적 <u>122㎡ 당</u> 1대																
3.~8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
<p><비 고> 1. (생 략)</p> <p>2.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가.~라. (생 략)</p> <p>마. 주차전용건축물(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)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(<u>판매시설 중 백화점·쇼핑센터·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·전시장·예식장은 제외한다</u>)</p> <p>3.~13. (생 략)</p>	<p><비 고> 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라. (생 략)</p> <p>마. 주차전용건축물(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)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<u>시설물</u></p> <p>3.~13. (현행과 같음)</p>